

●법무부령 제1123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9월 01일

법무부장관 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제9조제6호”를 “제9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가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1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1. 「형사소송법」 제424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형사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2. 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열람·등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열람·등사의 방법) ①· ②(생략) ③ 소송대리인,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 해당된다. 이하 같 다] 또는 제9조제6호의 변호사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자(이하 “사용인등” 이라 한다)로 하여금 사건기록 을 열람·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얻 어야 한다.	제4조(열람·등사의 방법) ①· ②(현행과 같음) ③ ----- ----- ----- ----- ----- 제9조제1항 제6호----- ----- ----- ----- ----- ----- ----- ----- ----- ----- ----- -----
④·⑤(생략) 제9조(수수료의 면제)(생략) <신설>	④·⑤(현행과 같음) 제9조(수수료의 면제) ①(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자가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

	를 면제한다. 다만, 1사건에서 <u>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u> 1. 「형사소송법」 제424조 또 <u>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형 사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u> 2. 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u>재심의 청구를 위임받은 변호 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 한)·법무조합</u>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사 사건 희생자 등 국민의 재심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이들로부터 재심 청구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